

○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별 맞춤형 안내사항

△ 병역판정검사대상, 현역대상 및 사회(대체)복무요원소집대상

- 단기국외여행허가 연령은 27세까지, 허가기간(2년)내
 - * (예외) 일반대학원의 의학과·치의학과·한의학과·수의학과·약학과, 의학전문대학원·치의학전문대학원 및 박사학위과정은 28세까지,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 5순위 자원은 30세까지 허가 가능
- 입영일이 결정된 자원은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 가능 안내

△ 사회복무요원

- 복무기관(근무지)장 추천서 발급 후 병무청 별도 신청
 - * 추천서 발급 신청과는 별개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요
 - ** 복무중단(분할복무 포함)시 국외여행허가 원칙적 불가

△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

- (국외출장)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(업무시간 중) 후 허가
 - * 국외출장 사유 허가 신청 → 해당과(산지계) 검토 → 국외여행 허가
- (단기여행) 소속기관(업체) 휴무일 전(前) 추천서 발급 필수
 - * 소속기관(업체)장 추천서 발급할 수 없을 경우, 출국 불가

△ 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(25세이상)

- 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: 소속학교(병원)의 장 추천서 필수
- 군종사관후보생 : 국방부장관의 추천서 필수
-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: 소속부처(중앙인사위) 장의 추천서 필수